

-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5. 3. 25.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 경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3월 7일

○ 회부일자 : 2005년 3월 8일

상정일자 :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5. 3. 21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감사관 박종섭)

제안 이유

○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청구권자는 충청북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안 제2조)

- 충청북도의 조례·규칙·훈령·지침·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등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가 청구대상으로 함(안 제3조)
- 제도개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감사 위원회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제도개선 청구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

-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나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부패의 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청구하여 이를 개선 시정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관한 시야를 넓혀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부패유발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중 20세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청구는 문서로 하되, 제도개선 청구사항,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청구된 사항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 「충청북도 감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결정되면 도지사는 곧바로 60일이내 제도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그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공직내부에만 의존하는 등 소극적이었으나, 이를 탈피하여 도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조리 요소를 발굴 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2조에서 청구권자를 도민 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포함할 등을 직접 반영한 제도개선이나 제도개선 결과에 대하여 불복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 아울러 조례시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택·시행된 제도개선안중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도민이나 단체의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수정 이유

- 동 조례안은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 조례안중 일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문 정리

수정 주요내용

- 부패유발 제도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청구권자의 범위 확대
 - 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안 제2조)
 - 대표자 문구 삭제(안 제4조제1호, 안 제6조내지 제7조)
 - 별지 제3호서식 문구 삭제(안 제4조)
 - 안 별지 제2호서식내지 제3호서식 삭제
- 일부 중복내용 삭제
 - 안 제5조제2항의 충청북도감사위원회 자문사항은 안 제3조의 청구대상과 중복으로 삭제 (안 제5조제2항)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3. 21.

제안자 : 오장세의원 외

□ 수정 이유

- 동 조례안은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 조례안중 일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문 정리

□ 수정 주요내용

- 부패유발 제도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청구권자의 범위 확대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안 제2조)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 안 제4조중 “내지 별지 제3호서식”과 제1호중 “대표자 및”을 삭제
 - 안 제6조내지 제7조중 “대표자”를 삭제
 - 안 별지 제1호서식중 “청구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며, 서식 하단 첨부서류중 “1. 청구인명부(50인 이상 연서)”를 삭제하고 “2”를 “1”로 함.
 - 안 별지 제2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일부 중복된 내용 삭제
 - 안 제5조제2항의 충청북도감사위원회 자문사항은 안 제3조의 청구대상과 중복으로 삭제 (안 제5조제2항)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 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를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본문중 “내지 별지 제3호서식”과 제1호중 “대표자 및”을 삭제 한다.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6조, 안 제7조중 “대표자”를 삭제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중 “청구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며, 서식 하단 첨부서류중 “1. 청구인명부(50인 이상 연서)”를 삭제하고 “2”를 “1”로 한다.

안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청구권자)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u>도민과 단체로 하되, 20세 이상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u></p>	<p>제2조(청구권자) ----- ----- ----- -----자로 한다.</p>
<p>제4조(청구) 제도개선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u>내지</u>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문서로서 청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 및 청구인 인적사항 2.-3. (생략) 	<p>제4조(청구) ----- ----- ----- (삭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 2.-3. (제정안과 같음)
<p>제5조(요건심사 등) ① (생략) <u>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u> <u>1. 도 소관의 자치법규나 관련제도 해당여부</u> <u>2. 제도개선 청구사항이 부조리 또는 부폐유발 요인의 해당 여부</u> <u>③ (생략)</u></p>	<p>제5조(요건심사 등) ① (제정안과 같음) <u>(삭제)</u> <u>② (제정안과 같음)</u></p>
<p>제6조(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도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u>대표자</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조(처리) ----- ----- ----- ----- ----- ----- (삭제) -----</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처리결과 통보) 도지사는 제도개선청구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 <u>대표자</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p>					<p>제7조(처리결과 통보) ----- ----- ----- (삭제) -----</p> <p>(별지 제1호서식)</p>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서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서				
청구인 <u>대표자</u>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인 <u>(삭제)</u>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청구내용				
<p>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u>대표자</u> (서명 또는 날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p>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u>(삭제)</u> (서명 또는 날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p>※ 첨부서류 : 1. 청구인명부(50인 이상 연서) 2. 청구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p>					<p>※ 첨부서류 : <u>(삭제)</u> 1. 청구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p>				

제 정 안	수 정 안																																																								
<p>(별지 제2호서식)</p> <p>(청구인명부의 표지)</p> <p><u>제도개선 청구인명부</u></p> <p>○ 서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p> <p>○ 서명주민수 : 명</p> <p>청구인 대표자 (인)</p> <p>(별지 제3호서식)</p> <p>청 구 인 명 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번호</th> <th>성명</th> <th>주민등록 번호</th> <th>주소</th> <th>서명또는 날인</th> <th>서명일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란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성명란은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를 기재한다. 주소란은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서명 또는 날인란은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인장을 날인한다.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자 를 기재한다.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명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p>(삭제)</p> <p>(삭제)</p>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명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패유발 제도 개선 청구(이하 “제도개선청구”라 한다)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구권자)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 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제3조(청구대상) ① 제도개선청구대상은 충청북도 소관 조례·규칙· 훈령·지침·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충청북도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2. 부패소지가 아닌 단순한 행정편의 사항인 경우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도개선 청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청구) 제도개선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로서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인적사항
2. 제도개선 청구사항·청구취지·청구이유
3. 입증자료

제5조(요건심사 등) ①도지사는 제도개선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감사위원회(“위원회”라 한다)에 제도개선 대상 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도개선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도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보) 도지사는 제도개선청구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 패 유 발 제도개선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 구 내 용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청구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				

210 mm × 297mm
(인쇄용지 60g/m²)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부패방지법

제20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13조(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